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검사 의견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 목 차 ||

I. 결산검사 경과	5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6
III. 세입세출 결산.....	9
IV. 기금결산	18
V. 재무제표	20
VI. 성과보고서	22
VII. 기타 결산	
1. 채권현재액	24
2. 채무현재액.....	25
3. 공유재산현재액.....	26
4. 물품현재액.....	27
VIII.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29
1. 개선 및 권고사항(8).....	31
2. 수범사례(5).....	57
IX. 현장방문결과	65
X.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67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10일(1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이 명 연(도의원)
- 위 원 : 김 성 수(도의원)
- 위 원 : 전 용 태(도의원)
- 위 원 : 김 반 석(회계사)
- 위 원 : 국 순 화(변호사)
- 위 원 : 강 용 구(전 도의원)
- 위 원 : 박 양 래(전직 공무원)
- 위 원 : 정 선 수(전직 공무원)
- 위 원 : 이 중 환(전직 공무원)
- 위 원 : 박 국 구(전직 공무원)
- 위 원 : 오 세 훈(전직 공무원)
- 위 원 : 나 종 채(전직 공무원)
- 위 원 : 조 창 근(전직 공무원)
- 위 원 : 유 태 희(전직 공무원)
- 위 원 : 이 후 천(전직 공무원)

결산검사 의견서

전라북도지사 귀하

2023년 5월 1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0일 까지(1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전라북도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결산서와 회계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되는지를 확인 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었으며, 현장 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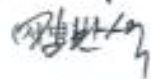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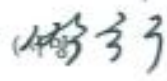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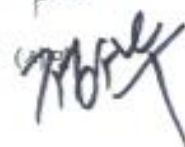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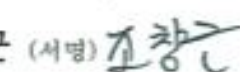
전라북도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재활병원 건립,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 전라북도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정성 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 자금운용으로 역대 최고이자수입 달성 등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도금고 약정시 정기예금 금리 상향 필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설정 개선, '22년도 예산편성업무 추진 미흡,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재정 운용 미흡, 성과관리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등 8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여 전라북도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이명연 (서명) 	검사위원 전용태 (서명) 
검사위원 김성수 (서명) 	검사위원 강용구 (서명) 
검사위원 국순화 (서명) 	검사위원 김반석 (서명) 
검사위원 나종채 (서명) 	검사위원 박국구 (서명) 
검사위원 박양래 (서명) 	검사위원 오세훈 (서명) 
검사위원 유태희 (서명) 	검사위원 이종환 (서명) 
검사위원 이후천 (서명) 	검사위원 정선수 (서명) 
검사위원 조창근 (서명) 	

2022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3. 5. 1. ~ 5. 10.(1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 표 위 원	이 명 연	결산검사 총괄	
위 원 (간 사)	오 세 훈	결산검사 업무 총괄 조정	
위 원	김 성 수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전 용 태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김 반 석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국 순 화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강 용 구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박 양 래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정 선 수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이 종 환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박 국 구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나 종 채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조 창 근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유 태 희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이 후 천	결산검사 업무 전반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5. 1 ~ 5. 2.	결산검사 보고회 및 자료요구	
5. 3. ~ 5. 7.	결산검사 위한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5. 8.	현장방문(순창 실랜드 사업현장)	
5. 9.	결산검사를 위한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5.10.	결산검사 폐회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전라북도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세계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5년 평균 세입 12.1% 세출 12.3%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9.5%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 입	6,090,630	7,159,533	8,632,467	9,482,071	9,630,234
세 출	5,786,147	6,843,941	8,255,016	8,996,732	9,192,317
결산상잉여금	304,483	315,592	377,451	485,339	437,917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

2022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2.9%가 증가된 403,818백만원이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27,621백만원이 감소하였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C=A-B)	총비용 (D)	총수익 (E)	운영차액 (F=D-E)
2022년	15,364,382	794,378	14,570,004	8,319,848	8,696,457	△376,609
2021년	14,927,252	761,066	14,166,186	8,411,899	8,460,887	△48,988
증 감	437,130	33,312	403,818	△92,051	235,570	△327,621

○ 최근 5년간 채무 추이

최근 5년간 채무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고 일반회계 차입금은 중앙 정부차입금 전액 상환으로 외부채무는 없으며, 현재 채무는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발행에 의한 것으로 채권발행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매매량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1,497백만원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차입금(a)	-	-	-	-	-
특별회계 및 기금 차입금(b)	699,514	635,374	659,098	666,514	688,011
채무부담행위(c)	-	-	-	-	-
채무 총합계(d=a+b+c)	699,514	635,374	659,098	666,514	688,011

(2) 재정건전성

○ 재정자립도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재정 협력과-1985, 2022. 6. 13.)에 의하여 결산기준으로 작성한 재정자립도는 총수익에서 자체조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 수익(지방교육세 제외)과 세외수입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이고 재정자주도는 41.5%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익과 국고보조금수익 등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회계연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 표 명	산 식	비 율
재 정 자 립 도	(자체세입*) 1,964,458백만원 / (총세입) 8,364,514백만원 × 100	23.5%
재 정 자 주 도	(자주재원**) 3,471,061백만원 / (총세입) 8,364,514백만원 × 100	41.5%

* 자체세입 = 지방세(1,802,776백만원) + 세외수입(161,682백만원)

** 자주재원 = 자체세입(1,964,458백만원) + 지방교부세(1,506,603백만원)

○ 안정성

안정성은 총수지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순자산 비율로 구성되며 총수지 비율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전라북도의 총수지 비율은 95.7%이다.

부채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부채는 그 성격상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순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그만큼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전라북도의 부채비율은 5.5%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를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으로 나눈 유동비율은 비율이 작을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라북도의 유동비율은 13.6%로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전라북도의 순자산비율은 94.8%로 매우 양호하다.

〈2022회계연도 안정성 지표 분석〉

지 표 명	산 식	비율
총수지비율	(총비용 8,319,848백만원 / 총수익 8,696,457백만원) × 100	95.7%
부 채 비 율	(총부채 794,378백만원 / 순자산 14,570,004백만원) × 100	5.5%
유 동 비 율	(유동부채 175,006백만원 / 유동자산 1,284,164백만원) × 100	13.6%
순자산비율	(순자산 14,570,004백만원 / 총자산15,364,382백만원) × 100	94.8%

II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 계	9,593,546	9,630,234	9,192,317	437,917
일 반 회 계	8,575,981	8,610,490	8,207,874	402,616
특 별 회 계	1,017,565	1,019,744	984,443	35,301
공기업특별회계	-	-	-	-
기타특별회계	1,017,565	1,019,744	984,443	35,301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437,917	123,213 (149,265)	13,063 (26,596)	-	2,428	299,213
일 반 회 계	402,616	115,145 (141,197)	10,139 (23,672)	-	2,345	274,987
특 별 회 계	35,301	8,068	2,924	-	83	24,226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특별회계	35,301	-	-	-	83	24,226

※ ()는 자금 없는 이월액(명시 26,052, 사고 13,533) 포함, 결산상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액 제외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630,23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593,546백만원보다 36,68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5.5%인 9,192,317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7,917백만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123,213백만원, 사고이월비 13,063백만원 및 보조금 반납금 2,42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9,213백만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99,213백만원임이 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2-1.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예산현액 비 대 초과수납액 (다-가)	불납결손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예산현액 대 수납액 (다/가)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다/나) (%)
합 계	8,575,981	8,639,142	8,610,490	34,509	3,646	25,006	100.4%	99.7%
지방세	1,906,392	2,000,641	1,976,245	69,853	3,639	20,757	103.7%	98.8%
세외수입	153,433	165,934	161,683	8,250	7	4,244	105.4%	97.4%
경상적 세외수입	32,638	36,527	36,385	3,747	-	142	111.5%	99.6%
임시적 세외수입	120,024	128,476	124,452	4,428	7	4,017	103.7%	96.9%
지방행정 제재부담금	771	931	846	75	-	85	109.7%	90.9%
지방교부세	1,505,107	1,506,603	1,506,603	1,496	-	-	100.1%	100.0%
보조금	4,496,533	4,450,040	4,450,040	△46,493	-	-	99.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14,516	515,924	515,919	1,403	-	5	100.3%	100.0%

(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내역

- ①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과세표준액) 상승으로 취득세 6,829백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로 지방소비세 58,067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69,853백만원(3.7%) 초과수납됨
- ② 시·군 및 민간에 보조한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인 보조금반환수입 4,325백만원, 골재채취관련 공유수면 점·사용료 1,688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8백만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8,250백만원(5.4%) 초과 수납됨
- ③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505,107백만원, 실제수납액 1,506,603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496백만원 초과 수납됨
- ④ 보조금은 예산현액 4,496,533백만원 보다 46,493백만원 과소 수납된 4,450,040백만원이 수납됨

(나) 미수납 내역

- ① 지방세는 불납결손액 3,639백만원을 제외하고, 20,757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예산현액 대비 1.09%)
지방세 미수납액은 무재산 1,495백만원, 행방불명 338백만원, 납세태만 9,877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1,208백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35백만원, 격리 또는 입원 7백만원, 소송계류 33백만원, 국외이주 18백만원, 자금압박 2,567백만원, 납기 미도래 3,749백만원, 기타 1,330백만원 등의 사유로 발생함
- ② 세외수입은 불납결손액 7백만원을 제외하고, 4,24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예산현액 대비 2.77%)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무재산 3백만원, 행방불명 3백만원, 납세태만 253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1백만원, 기타 3,436백만원, 납기 미도래 548백만원 등의 사유로 발생함

2-2.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라)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나/가)	이월액 (다/가)	집행잔액 (라/가)
합 계	8,575,981	8,207,874	164,869	5,259	197,979	95.7%	1.9%	2.3%
일반및공공행정	936,734	904,917	30,881	15	921	96.6%	3.3%	0.1%
공공질서및안전	522,447	521,544	703	80	120	99.8%	0.1%	0.0%
교육	249,872	248,850	1,000	-	22	99.6%	0.4%	0.0%
문화 및 관광	428,146	400,005	24,674	-	3,467	93.4%	5.8%	0.8%
환경	541,831	533,315	3,368	2,463	2,685	98.4%	0.6%	0.5%
사회 복지	2,858,937	2,854,183	2,248	1,942	564	99.8%	0.1%	0.0%
보건	228,005	220,999	6,591	225	190	96.9%	2.9%	0.1%
농림해양수산	1,318,479	1,267,665	49,148	450	1,216	96.1%	3.7%	0.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82,529	473,344	7,226	-	1,959	98.1%	1.5%	0.4%
교통 및 물류	264,147	237,753	25,280	13	1,101	90.0%	9.6%	0.4%
국토및지역개발	326,855	312,976	13,750	27	102	95.8%	4.2%	0.0%
과학기술	13,846	13,842	-	-	4	100.0%	0.0%	0.0%
예비비	180,485	-	-	-	180,485	0.0%	0.0%	100.0%
기타	223,668	218,481	-	44	5,143	97.7%	0.0%	2.3%

(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75,981 백만원, 지출액은 8,207,874 백만원(예산현액의 95.7%)으로, 2022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64,869백만원, 집행잔액은 2.3%인 197,979백만원임

(나) 2022년도로 이월되는 내역

- ① 명시이월은 116건 141,197백만원임 (자금없는 이월 9건 26,052백만원 포함)
- ② 사고이월은 20건 23,672백만원임 (자금없는 이월 1건 13,533백만원 포함)

2-3. 2022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원)

구 분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비고
일 반 회 계	8,610,490,279,082	8,610,490,279,082	-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원)

구 분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비고
일 반 회 계	8,207,873,503,791	8,207,873,503,791	-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3. 특별회계

3-1. 세입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예산현액 대비 과소수납액 (다-가)	불납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예산현액 대비 납률 (다/가)	징수결정액 대비 납률 (다/나)
합	계	1,017,565	1,019,826	1,019,744	2,179	-	82	100.2%	100.0%
세	외 수 입	51,097	53,425	53,343	2,246	-	82	104.4%	99.8%
	경상적세외수입	861	946	946	85	-	-	109.9%	100.0%
	임시적세외수입	34,583	34,617	34,570	△13	-	47	100.0%	99.9%
	지방행정체재부과금	15,653	17,862	17,827	2,174	-	35	113.9%	99.8%
보	조 금	461,614	461,614	461,614	-	-	-	100.0%	100.0%
보	전수입및내부거래	504,854	504,787	504,787	△67	-	-	100.0%	100.0%
	보 전 수 입 등	49,269	49,202	49,202	△67	-	-	99.9%	100.0%
	내 부 거 래	455,585	455,585	455,585	-	-	-	100.0%	100.0%

(가) 예산현액 대비 과소 및 초과 수납액 내역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2,179백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58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8백만원, 소방특별회계 7백만원,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78백만원 과소 수납되었음.

(나) 미수납액 내역

- 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34백만원
- 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 없음
- ③ 동부권 특별회계 미수납액 없음
- ④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수납액 없음
- ⑤ 소방 특별회계 41백만원
- ⑥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백만원

3-2. 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라)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나/가)	이월액 (다/가)	집행잔액 (라/가)
합 계	1,017,565	984,443	10,992	83	22,047	96.7%	1.1%	2.2%
농어촌주택사업	8,039	2,370	-	-	5,669	29.5%	0.0%	70.5%
의료급여기금	581,603	577,705	-	-	3,898	99.3%	0.0%	0.7%
동부권	36,683	36,000	-	-	683	98.1%	0.0%	1.9%
학교용지부담금	27,459	17,848	-	-	9,611	65.0%	0.0%	35.0%
소 방	363,055	349,911	10,992	83	2,069	96.4%	3.0%	0.6%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726	609	-	-	117	83.9%	0.0%	16.1%

(가)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17,565백만원 중 지출액은 984,443백만원 (예산현액의 96.7%)으로, 2022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0,992백만원 (예산현액의 1.1%)이며, 보조금반납금은 83백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22,047백만원임

(나) 2022년도로 이월되는 내역

① 명사이월

- 소방 특별회계 4건 8,068백만원

② 사고이월

- 소방 특별회계 2건 2,924백만원

3-3. 2022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원)

구 분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합 계	1,019,744,119,825	1,019,744,119,825	-
농 어 촌 주 택 사 업	7,961,995,290	7,961,995,290	-
의 료 급 여 기 금	581,690,844,752	581,660,844,752	-
동 부 권	36,683,370,560	36,683,370,560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29,616,702,088	29,616,702,088	-
소 방	363,061,410,685	363,061,410,685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729,796,450	729,796,450	-

(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2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원)

구 분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합 계	984,443,180,747	984,443,180,747	-
농 어 촌 주 택 사 업	2,369,850,700	2,369,850,700	-
의 료 급 여 기 금	577,704,721,630	577,704,721,630	-
동 부 권	36,000,000,000	36,000,000,000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7,849,333,000	17,849,333,000	-
소 방	349,910,769,817	349,910,769,817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608,505,600	608,505,600	-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2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4.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 (가) 예산이용은 없으며,
- (나) 예산전용은 4개부서 4건 84백만원이며
- (다) 예산이체는 447건 469,900백만원으로, '22. 10. 21.자 조직개편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예산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5. 채무부담행위

2022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 신규 발생액은 없다.

6. 예비비 지출

(단위:백만원)

회계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합 계	231,258	29,094	29,091	-	3
일반회계	209,423	28,939	28,936	-	3
일반예비비	36,042	25,025	25,022	-	3
재해재난목적	173,381	3,914	3,914	-	-
내부유보금	-	-	-	-	-
기타특별회계	21,835	155	155	-	-
일반예비비	21,641	155	155	-	-
내부유보금	194	-	-	-	-

예비비 예산액 231,258백만원으로서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외 36건 29,09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9,091백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3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로 25,177백만원,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3,914백만원을 사용하였다.

IV. 기금결산

○ 현 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 말 (a)	당해연도 증감		현년도말 (a+b-c)	전년대비 증감액
		조성액 (b)	사용액 (c)		
합 계	948,622	254,073	190,895	1,011,800	63,17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04,142	26,302	23,168	207,276	3,134
사 회 적 경 제 기 금	5	501	478	28	23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통 합 계	52,286	13,641	6,327	59,600	7,314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재 정 안 정 화 계	2,708	27	-	2,735	27
지 역 개 발 기 금	582,984	189,800	149,562	623,222	40,238
재 난 관 리 기 금	13,664	12,155	7,328	18,491	4,827
체 육 진 흥 기 금	10,098	174	150	10,122	24
자 활 기 금	5,225	92	319	4,998	△227
재 해 구 호 기 금	9,349	6,128	754	14,723	5,374
성 평 등 기 금	3,371	54	47	3,378	7
노 인 복 지 기 금	2,134	31	34	2,131	△3
식 품 진 흥 기 금	9,980	614	1,073	9,521	△459
환 경 보 전 기 금	2,494	1,043	980	2,557	63
혁 신 도 시 성 과 공 유 기 지 역 균 형 발 전 기 금	4,418	935	-	5,353	935
농 립 수 산 발 전 기 금	35,056	2,438	675	36,819	1,763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0,708	138	-	10,846	138

○ 내 용

검사결과 지역개발기금 등 15개 기금의 2022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011,80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3,17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중 254,073백만원을 조성하였고, 190,895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의무적으로 적립할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매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2022년도 중 재난관리기금 11,602백만원, 재해구호기금 5,802백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적립 비율에 상응하게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2회계연도의 기금 지출액은 190,895백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아울러, 기금 연도말 조성액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37,600백만원(농림수산발전기금 20,200백만원, 환경보전기금 800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800백만원, 식품진흥기금 6,600백만원, 체육진흥기금 5,400백만원, 자활기금 800백만원, 성평등기금 1,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예탁한 9,280백만원과 일반회계에 예탁한 199,22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V. 재무제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5,364,382	14,927,252	437,130	2.9%
I. 유 동 자 산	1,284,164	995,098	289,066	29.0%
II. 투 자 자 산	335,956	348,977	△13,021	△3.7%
III. 일 반 유 형 자 산	863,455	830,318	33,137	4.0%
IV. 주 민 편 의 시 설	253,342	191,495	61,847	32.3%
V. 사 회 기 반 시 설	12,617,752	12,552,372	65,380	0.5%
VI 기타비유동자산	9,713	8,992	721	8.0%
부 채	794,378	761,066	33,312	4.4%
I. 유 동 부 채	175,006	200,226	△25,220	△12.6%
II. 장 기 차 입 부 채	597,346	525,420	71,926	13.7%
III. 기타비유동부채	22,026	35,420	△13,394	△37.8%
순 자 산	14,570,004	14,166,186	403,818	2.9%
I. 고 정 순 자 산	13,742,113	13,581,118	160,995	1.2%
II. 특 정 순 자 산	406,854	371,929	34,925	9.4%
III. 일 반 순 자 산	421,037	213,139	207,898	97.5%

2022회계연도말 전라북도의 자산은 15조 3,643억 8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4조 9,272억 52백만원보다 437,130백만원(2.9%)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289,066백만원(29.0%) 증가에 따른 것이며,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 자산인 사회기반시설은 65,380백만원(0.5%), 주민편의시설은 61,847백만원(32.3%), 일반유형자산은 33,137백만원(4.0%)이 증가하였고, 투자자산은 13,021백만원(△3.7%)이 감소하였다.

또한, 2022회계연도말 전라북도의 부채는 794,378백만원으로 전년도의 761,066백만원보다 33,312백만원(4.4%)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매매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2,845,941	2,758,312	87,629	3.18%
가. 사업총원가	7,771,693	7,920,204	△148,511	△1.88%
나. 사업수익	4,925,752	5,161,892	△236,140	△4.57%
II. 관리운영비	500,690	456,735	43,955	9.62%
III. 비배분비용	47,465	34,959	12,506	35.77%
IV. 비배분수익	184,811	168,062	16,749	9.97%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209,285	3,081,944	127,341	4.13%
VI. 일반수익	3,585,894	3,130,932	454,962	14.53%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376,609	△48,988	△327,621	-

전라북도 2022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7,771,693백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925,752백만원을 차감한 2,845,941백만원이며,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일반공공행정’(631,173백만원)과 ‘사회복지’(622,910백만원)이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88,597백만원과 경비 11,530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7,686백만원, 기타비용 39,779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70,376백만원, 기타수익 114,435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재정운영결과는 △376,609백만원으로 전년도의 △48,988백만원보다 327,621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체조달수익 167,268백만원 증가하였고, 정부간이전수익 71,304백만원이 증가한 결과이다.

Ⅵ.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만원)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2022 결산액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수 (D)	달성률 (B+C)/A	
계	22	162	346	67	271	8	97.69%	9,192,317
기업유치지원실	1	14	21	6	15	-	100.00%	346,873
대 변 인	1	1	1	-	1	-	100.00%	1,323
감 사 관	1	1	3	1	2	-	100.00%	662
인 권 담 당 관	1	1	3	1	2	-	100.00%	425
기 획 조 정 실	1	7	18	6	12	-	100.00%	1,170,358
도 민 안 전 실	1	6	14	2	12	-	100.00%	174,863
자 치 행 정 국	1	5	14	1	13	-	100.00%	125,050
문화체육관광국	1	5	18	3	15	-	100.00%	371,453
복지여성보건국	1	16	31	6	24	1	96.77%	3,505,210
환 경 녹 지 국	1	10	22	4	17	1	95.45%	642,258
건 설 교 통 국	1	11	21	10	11	-	100.00%	493,529
미 래 산 업 국	1	9	19	3	15	1	94.74%	175,422
농생명축산식품국	1	6	19	1	17	1	94.74%	930,476
교육소통협력국	1	9	11	1	10	-	100.00%	47,793
새만금해양수산국	1	4	10	1	9	-	100.00%	250,624
소 방 본 부	1	5	6	1	5	-	100.00%	662,951
의 회 사 무 처	1	4	12	-	11	1	91.67%	14,405
농 업 기 술 원	1	10	31	1	29	1	96.77%	57,103
인 재 개 발 원	1	3	6	-	6	-	100.00%	6,673
보건환경연구원	1	3	12	-	12	-	100.00%	12,510
자치경찰위원회	1	2	4	-	4	-	100.00%	9,969
사 업 소	1	30	50	19	29	2	96.00%	192,387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전라북도는 2022회계연도의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2개)-정책사업목표(162개)-단위사업(34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16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4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전라북도의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9,192,316백만원이며, 성과달성도 130%이상 67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고, 100%이상 271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100%미만 8개 지표는 미달성하였다.

Ⅶ. 기타결산

1. 채권현재액

○ 현 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분	'22년말 현재액	'21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5,445	201,495	△16,049	△8.0%
보 증 금 채 권		472	472	-	-
	사 무 실 임 대	350	350	-	-
	전 화 선 예 치 금	15	15	-	-
	기 타	107	107	-	-
용 자 금 채 권		184,951	201,000	△16,049	△8.0%
	공 무 원 학 자 대 여 금	15,913	16,407	△494	△3.0%
	지 역 개 발	144,484	157,314	△12,830	△8.2%
	주 택 용 자	22,347	25,598	△3,251	△12.7%
	기 타	2,207	1,681	526	31.3%
기 타 채 권		23	23	-	-
	기 타	23	23	-	-

○ 내 용

결산검사 결과 채권의 2022년도말 현재액은 185,445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6,049백만원(△8.0%) 감소하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 472백만원, 용자 금채권 184,951백만원, 기타 채권 23백만원이다.

주된 증감 사유는 사회적경제기금 용자금 등이 526백만원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12,830백만원, 주택자금 3,251백만원 및 공무원학자금 494백만원 등 용자금채권 16,049백만원이 채무상환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현재액

○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1년말 현재액 (a)	발생액 (b)	소멸액 (c)	2022년말 현재액 (a+b-c)
합 계	666,514	162,040	140,543	688,011
일 반 회 계	-	-	-	-
특 별 회 계	-	-	-	-
지역개발기금	666,514	162,040	140,543	688,011

○ 내 용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21,497백만원이 증가한 688,01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중 162,04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40,543백만원이 소멸하였다. 채무 종류별로 지역개발 채권 688,011백만원, 정부차입금 0원, 민간차입금 0원이다.

향후 5년간 채무 상환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688,011	90,665	78,647	182,836	174,237	161,626
기 금	688,011	90,665	78,647	182,836	174,237	161,626

현재 시점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는 1.05% 복리이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일시상환임을 확인하였다.

3. 공유재산현재액

○ 종류별 현황

(단위 : 개, 천㎡, 백만원)

종 류 별	2022년말현재액		2021년말현재액		증 감 액	
	면적(수량)	가격	면적(수량)	가격	면적(수량)	가격
합 계		13,965,434		13,322,795		642,639
토 지	148,921	620,637	148,686	603,235	235	17,402
건 물	634	833,806	545	646,336	89	187,470
입 목 족	7,101	1,614	7,600	1,607	△499	7
공 작 물	3,459	12,129,630	3,420	11,905,640	39	223,990
선 박	8	15,793	4	10,988	4	4,805
항 공 기	1	1,802	1	1,802	-	-
무 체 재 산	160	416	158	414	2	2
유 가 증 권	27,644,828	151,685	27,644,822	147,568	6	4,117
용 익 물 권	25	4,342	26	4,407	△1	△65
회 원 권	41	798	41	798	-	-
건 설 중 인 산 재	56	204,911	-	-	56	204,911

2022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642,639백만원이 증가한 13,965,434백만원이다.

공유재산 종류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도로·하천부지 등) 235천㎡ 17,402백만원, 건물(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수면갑각류 연구시설 등) 89천㎡ 187,470백만원, 공작물(도로·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구축물 등) 223,990백만원, 유가증권(소부장 모태펀드 등) 4,117백만원, 선박(어장정화선) 4척 4,805백만원, 2022회계연도부터 공유재산에 포함된 건설중인 재산 204,911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용익물권(전세권 설정)이 65백만원 감소하였다.

4. 물품현재액

○ 현 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말 현재액	전년도 증 감
		취득	처분		
수 량	3,494	478	310	3,662	168
금 액	100,527	19,281	11,540	108,268	7,741

○ 내 용

검사결과 2022년도말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3,662점에 108,268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2021년도말과 비교하여 보유수량은 168점이 증가하였고, 보유금액은 7,741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무주, 임실소방서 개서 등 소방시설 확충에 따른 소요물품 증가에 따른 것이 주요인으로 일반차량(5종 34대), 소방차량(9종 40대) 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VIII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개선 및 권고사항

1. 도금고 약정시 정기예금 금리 상향 필요
2.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설정 개선
3. 2022년도 예산편성업무 추진 미흡
4.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5.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재정 운용 미흡
6. 성과관리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7. 지방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8.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

1 도금고 약정시 정기에금 금리 상향 필요

□ 현 황

○ 정기에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현황

금융상품	개 념	약정 금리	이자 정산일	비고 ('23.4.)
❶ 공금예금	- 기본계좌 : 도 세입·세출 통합계좌 - 금고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유사	고정금리 0.49	상반기 7월 하반기 익년 1월	0.49%
❷ 수시입출금식예금	-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고금리 저축성 예금 -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단기로 운용에 적합(MMDA)	변동금리 COFIX-0.62	매월 말	3.09% (3.71-0.62)
❸ 정기에금	- 일정기간을 사전에 정하여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예금 -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을 받지 않는 예금 (만기 전 해지 시 약정금리의 1/2 적용)	변동금리		
1개월		COFIX-0.52	만료시	3.19%(3.71-0.52)
3개월		COFIX-0.42	만료시	3.29%(3.71-0.42)
6개월		COFIX-0.32	만료시	3.39%(3.71-0.32)
12개월		COFIX-0.22	만료시	3.49%(3.71-0.22)

※ '23.4.15. 기준 COFIX 금리 3.71%

<관계 법령>

- 전라북도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2021. 12. 16. 약정)
 - 제7조(이자계산 및 지급) 2항에 따라 금고은행은 예치당시 전국은행 연합회COFIX(잔액기준) 금리에 따라 이자 지급

□ 문제점

- 도금고 정기에금 약정 금리가 수시입출금식예금 약정 금리와 이율 차이가 크지 않음
 - * 1개월 0.1%, 3개월 0.2%, 6개월 0.3%, 12개월 0.4%
- 정기에금 예치 비율이 큰 기금은 정기에금 금리가 낮아 이자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음

○ 2022년 기금 이자 현황(예치금액 20억 이상)

(단위: 백만원)

상품명	예치금액	기간	이율	해지이자	만기일
재 해 구 호 기 금	2,861	12	0.85%	26	20220129
농 립 수 산 발 전 기 금	3,200	12	0.85%	27	20220318
농 립 수 산 발 전 기 금	2,500	12	0.85%	21	20220625
재 난 관 리 기 금	4,677	12	0.85%	42	20221001
통합기금재정안정화계정	2,708	12	0.85%	23	20221008
재 해 구 호 기 금	4,500	12	0.85%	39	20221119

※ 2022년 가입 정기예금 이율 : 1.08% ~ 2.97%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도금고 이율 약정시 정기예금의 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보다 높게 약정하여야 할 것이며,
- 기금의 경우 연중 평잔의 변동이 거의 없는 자금이 있어 이 또한 도금고 약정시 별도로 구분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예치가 가능한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관련부서 : 세정과, 예산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

2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설정 개선

□ 현 황

- 2022년 농어촌주택 사업 특별회계 및 동부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본예산	추 경	예산현액	지출액	예비비	예비비 비율
농 어 촌 주택 사업	3,960,000	4,079,153	8,039,153	2,369,850	5,659,153	70.4%
동 부 권	36,655,749	27,619	36,683,368	36,000,000	683,368	1.8%

<관계 법령>

-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9조에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의하여 동부권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전라북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서 본 특별회계의 경리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이 내로 하고 있음에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70.4%로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음

- 동부권 특별회계의 경우 관련조례에 의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2022년 결산 결과 예산 총액의 1.8%의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음
- 이러한 과도한 예비비의 계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예산총액의 1%이내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어긋남
- 또한 동부권 특별회계의 경우 동부권 6개 시군에 정액의 지방자치단체 보조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바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비비 계상이 적절한지 의문임
-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과도하게 계상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을 산출하여 예산을 책정할 것이며,
- 동부권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계상을 하지 않고, 사업연도 중 이자수입 등 잉여금 또한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예비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등이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부서 : 주택건축과, 정책기획관

3 | 2022년도 예산편성업무 추진 미흡

□ 현 황

○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사업 현황

(단위:개,천원)

2021년			2022년		
사업수	예산액	삭감액	사업수	예산액	삭감액
148	458,291,615	436,097,765	89	86,574,195	62,786,198

※ (21년 3회추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예산액은 동일하나 세부사업 변경하여 314,976백만원 삭감으로 계산

○ 추경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 현황

(단위:천원)

추경별	건수	당초예산	삭감액	비고
계	89	86,574,195	△62,786,198	
1회추경('22. 8. 1.)	26	20,133,052	△16,362,688	
2회추경('22. 12. 13.)	63	66,441,133	△46,423,510	

○ 인건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단위:천원)

본예산액	1회추경		2회추경(결산추경)		비고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462,622,544	465,199,524	증2,577,980	461,111,344	△4,088,180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문제점

-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각종 관련 법규에 의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 경정예산 편성 시 본예산 대비 89건에 627억원을 삭감하여 예산 편성한 바가 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에는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에 의한 삭감으로 일정부분 이해될 수 있으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취소 및 변경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 이는 예산편성 시 좀 더 심도있는 세밀한 검토(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어 삭감금액이 적지 않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음
- 또한,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인건비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등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에도 계상되고 있는데
 - 1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2,577백만원 증가된 465,199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으며
 - 2회 추경(최종) 시, 4,088백만원이 삭감된 461,111백만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는 1회 추경시 인건비 추계 계상이 잘못되어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 시 사업 계획에 대한 밀도있는 심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여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하고도 긴급한 사업 등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개선사항

- 예산부서 및 사업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 예산 등을 편성요구 및 심사 시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관련부서 : 예산과 및 전 실과

4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 현 황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용	2	26,000	5	121,784	4	84,300
변경사용	40	9,668,844	27	2,849,219	20	24,915,128

○ 2022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사 유
				감액	증액		
감 염 리 병 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사무관리비	8,800	300	-	'22.04.28	·3~4월 사회복무요원 보수 부족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57	-	300		
토 정 보 지 과	주소체계고도화 선도 사업	자치단체 자 본 보 조	70,000	70,000	-	'22.09.29	·행안부-도-전주시간 협의에 따른 시행 기관 변경 ·도 직접시행에 따른 통계목 변경
	주소체계고도화 선도 사업	연구용역비	-	-	70,000		
일 민 경 제 과	지역노사민정 협 력 활 성 화	사무관리비	16,000	5,000	-	'22.10.28	·'23년 노동권익센터 개소를 위한 임대차 가계약 추진 ·가계약금 납부를 위한 전용
	지역노사민정 협 력 활 성 화	기 타 자 본 전 이	-	-	5,000		
소 기 획 통 과	온라인매체 및 뉴미디어 도 정 보	사무관리비	220,000	9,000	-	'22.11.07	·대학생 대상 영상 공모전 추진 ·공모전 우수작 시상금 지급을 위한 전용
	온라인매체 및 뉴미디어 도 정 보	기타보상금	-	-	9,000		

○ 2022회계연도 예산의 변경사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금액		비고
				감액	증액	
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조 운영비보조	950,700	139,500		국고보조사업 시스템연계 위한세부사업 실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조 운영비보조	0		139,50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11,702	10,000		국고보조사업 시스템연계 위한세부사업 실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0		10,000	
사회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	사회복지사업보조	1,226,340	1,226,340		국고보조사업 시스템연계 위한세부사업 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1,226,340	
사회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155,708	21,038,953		국고보조사업 시스템연계 위한세부사업 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21,038,953	
감염병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1,738	254,902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0		254,902	
여성가족과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회복지사업보조	458,128	257,358		국고보조사업 시스템연계 위한세부사업 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사회복지사업보조	0		257,358	
대도약청년과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	188,000	50,000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전산개발비	0		50,000	
어린이창의체험관	놀이 중심의 체험시설운영	사무관리비	82,800	3,500		
	놀이 중심의 체험시설운영	특정업무경비	0		3,500	
어린이창의체험관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14,896	2,720		
	부서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0		2,720	
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 급상	679,500	10,000		
	창극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 급상	170,000		10,000	
해양항만과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시설비	5,925,000	80,000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관리비	95,000		80,000	
회계과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486,385	6,600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90,600		6,600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	의원국외여비	167,213	19,350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5,850		19,35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설비	2,500,000	58,434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45,000		58,434	
해양항만과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시설비	5,845,000	10,000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시설부대비	39,200		10,000	
산림환경소	사방시설 조성	관리비	573,174	64,141		
	사방시설 조성	시설비	28,719,491		64,141	
산림환경소	사방시설 조성	시설부대비	110,224	59,102		
	사방시설 조성	시설비	28,783,632		59,102	
자치경찰과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8,800	2,713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7,300		2,713	
산림환경소	부서 인력운영비	공무직(무기계약) 수 급료차보수	1,347,645	8,650		
	부서 인력운영비	보수	1,948,640		8,650	
사회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378,967	1,612,865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038,953		1,612,865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49조

□ 문제점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 따라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당초 편성된 예산과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 기본원칙의 예외이므로 운영을 최소화 해야 함
- 2022회계연도 예산전용은 4건에 84,300천원, 변경사용은 20건에 24,915,128천원으로써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편성 이후 사업 추진상의 문제로 전용 및 변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특히, 하반기에 전용 및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여러 통계목에서 전용 및 변경을 하여 사용한 것은 예산 전용 및 변경의 남용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동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예산과 및 전 실과

5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 재정 운용 소홀

□ 현 황

○ 예산전액 불용처리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계	6개 사업	3,063	-	3,063	
사 회 복 지 과	의사상자 지원	40	-	40	
관 광 산 업 과	경천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1,000	-	1,000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400	-	400	
문 화 유 산 과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1,000	-	1,000	
	부안 백산성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500	-	500	
도로공항철도과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23	-	123	

□ 문제점

-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예산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 사회복지과 “의사상자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 3,063백만원은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됨으로써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에는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하여 현안 사업에 재원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 관련부서 : 사회복지과, 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도로공항철도과

6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 현 황

(단위 : 개)

실국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2	22	162	346	67	271	8

- '22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346개 지표 중 성과달성 결과는 초과달성 67개, 달성 271개, 미달성 8개임
- 미달성 지표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절약' 50% 등 8건, 초과달성 지표의 경우 '도민 소방안전교육 강화' 864% 등 67건으로 미달성과 초과달성의 정도 차이가 큼
 - 특히, 일선 소방서의 도민 소방안전교육은 152% ~ 864%의 초과 달성률을 보임

□ 문제점

- 행정안전부 훈령265호(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의하면 성과 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100%미만), 초과달성(130%이상)한 경우 원인 분석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불임의 25개 부서, 38건 지표(미달 2, 초과달성 36)의 경우 담당부서의 관심부족으로 보고서상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이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목표를 그대로 설정하거나 너무 높게 또는 낮게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표담당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전년도 성과를 초과달성하였음에도 성과목표치 상향 설정을 하지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하향 설정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함.

※ 관련부서 : 예산과 및 전 실과

실국명	부서명	성과지표명	달성률	비 고
계	25개 부서	38개 지표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원((개)기업)	133%	
		도지사 인증상품 지원기업 매출액(억원)	163%	
	금융혁신벤처기업육성(개)	금융혁신 벤처기업 육성(개)	140%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일자리 창출(유지) 및 정규직화(명)	149%	
감사관실	감사관	컨설팅 공직감찰과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등 민원조사를 통한 시정·개선사항 발굴, 조치(%)	138%	
인권담당관실	인권담당관	인권정책 및 인권증진 기반조성(회)	145%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형 국책사업 발굴 건수(건)	166%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 건수(건)	450%	
	예산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통계목 및 채무액 감축(억원)	158%	
		재정사업의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액(억원)	277%	
	청년정책과	인구정책 종합정책 내실화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건)	450%	
		청년의 정책참여 제고를 위한 청년문제 발굴(건)	133%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과	민생 6대분야 점검 및 코로나 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개소)	286%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분야 점검 및 추진 건수(건)	524%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수(천명)	199%	
	관광산업과	전북투어패스 전시군 확대(매)	132%	
	체육정책과	2023 전국 아태마스터스 대회 홍보(%)	140%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저소득 소외계층 나눔문화 확산(억원)	158%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명)	15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개소)	140%	
	건강증진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명)	155%	

실국명	부서명	성과지표명	달성률	비 고
환 경 녹 지 국	생 활 환 경 과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차 보급 수 및 국가예산 확보액(억원/대)	185%	
	물통합관리과	용담호 상수원 수질(ppm)	222%	
		국가하천 유지보수(억원)	143%	
건 설 교 통 국	지 역 정 책 과	도시군 관리계획 등 결정안 등 승인(건)	200%	
	토 지 정 보 과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검증 실적(%)	161%	
		지적 불부합지 정리 실적(필지)	142%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관리 공모사업 발굴(건수)	200%	
미 래 산 업 국	미 래 산 업 과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건)	195%	
	에 너 지 수 소 산 업 과	새만금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액(억원)	223%	
	탄 소 바이오 산 업 과	바이오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평가인증-지원 실적(건)	140%	
농 축 산 식 품 국	농 생명 식품 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억원)	145%	
	동 물 방 역 과	유기동물 보호수(마리)	97%	미달
교 육 소 통 협 력 국	교 육 협 력 단 추 진	대학연계지역사회 창의학교 활성화(아이디어 발굴건수)	353%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	의정활동 지원 수요자 만족도(점)	90%	미달
농 업 기 술 원	기 술 보 급 과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135%	
사 업 소	도 립 미 술 관	미술관 전시에 대한 관람객수(명)	135%	
		시각예술사 연구 및 소장작품 수집(건, 점)	146%	

7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4,775,262	4,773,740	4,731,906	38,913	2,921	
국비	3,883,019	3,861,661	3,837,635	21,738	2,286	
시도비	892,243	912,079	894,271	17,175	635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에 근거한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회계연도 내에 끝내지 못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초래되는 예산 낭비 폐단 방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지방의회 의결사항)

□ 문제점

- 전라북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8조 5,760억원 중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4조 7,752억원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5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집행에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월사업 최소화를 하여야함
 - 2022년도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사업 중 이월액이 389억원으로 전체 보조금 총액 대비 0.8%로 매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단, 이중 이월금액 5천만원 이상 17개 사업(368억원)은 사업 기간 연장, 가격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 관련부서 : 전 실과

2022년 보조금사업 집행 및 이월 현황(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수량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17개사업)		105,143 국)64,526 시도)40,617	102,248 국)61,631 시도)40,617	65,406 국)40,877.5 시도)24,528.5	36,815 국)20,876.5 시도)15,938.5	
자치행정과	2023 세계잼버리 지	21,927 국)9,404 시도)12,523	21,927 국)9,404 시도)12,523	10,178 국)5,507 시도)4,671	11,749 국)3,897 시도)7,852	공사 준공시기 등 미도래
문화산업과	세 계 서 예 비 엔 날 레 관 건 립	1,760 국)1,230 시도)530	1,760 국)1,230 시도)530	988 국)988 시도)	772 국)242 시도)530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 추진중
관광산업과	스 마 트 관 광 도 시 조 성 사 업	4,500 국)3,500 시도)1,000	4,000 국)3,000 시도)1,000	3,850 국)3,000 시도)850	150 시도)150	국비 미교부
문화유산과	전라유학진흥원건립	1,750 국)1,750	1,750 국)1,750		1,750 국)1,750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장애인복지과	장 애 인 종 합 지 원 센 터 설 치 및 운 영	3,000 국)3,000	3,000 국)3,000	752 국)752	2,247 국)2,247	·집행시기 미도래 (22.10~23.3)
감염병관리과	코 로 나 19 환 자 격 리 치 료 비 지 원	39,856 국)19,928 시도)19,928	39,856 국)19,928 시도)19,928	33,285 국)16,642 시도)16,643	6,570 국)3,285 시도)3,285	·집행시기 미도래
물통합관리과	스 마 트 하 수 처 리 장 구 축 사 업	3,055 국)2,037 시도)1,018	2,270 국)1,252 시도)1,018	1,876 국)1,252 시도)624	394 시도)394	·국비 미 송금
지역정책과	전북혁신도시 종합 발 전 계 획 용 역	175 국)175	175 국)175	112 국)112	63 국)63	·중앙부처 사업 지연

부서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지역정책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62 국)62	62 국)62		62 국)62	·준공 미도래 (2023. 1월)
교통정책과	교통문화 연구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71 국)29 시도)42	71 국)29 시도)42		71 국)29 시도)42	·집행시기 미도래 (태양광 원자재 수급난)
주택건축과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4,932 국)4,932	4,932 국)4,932		4,932 국)4,932	·국비교부 지연 (22.12.29)
농촌활력과	농촌 경제·사회서 비스 활성화 지원 센터 구축	500 국)250 시도)250	500 국)250 시도)250	35 국)35	465 국)215 시도)250	·행정절차 이행
수산정책과	어촌뉴딜	14,380 국)12,742 시도)1,638	12,770 국)11,132 시도)1,638	12,563 국)11,132 시도)1,431	207 시도)207	·국비 미송금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연구용역비	565 국)282 시도)283	565 국)282 시도)283	346 국)173 시도)173	219 국)109 시도)110	·집행시기 미도래 (연구용역기간 : 22.12~23.6)
농식품인력 개발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육성 센터(재료비 등)	1,800 국)1,800	1,800 국)1,800	1,148 국)1,148	627 국)627	·집행시기 미도래 (22.7~23.6) ·집행잔액(25백만원)
동물위생 사업소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 (시설비 등)	5,810 국)2,905 시도)2,905	5,810 국)2,905 시도)2,905		5,810 국)2,905 시도)2,905	·공사시기 미도래
수산기술 연구소	희다리새우 스마트 양식 실증 연구 시설 건립	1,000 국)500 시도)500	1,000 국)500 시도)500	273 국)136.5 시도)136.5	727 국)363.5 시도)363.5	·집행시기 미도래 1차공사) 22.11~23.6 2차공사) 23.6~23.11

8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

□ 현 황

-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22회계연도 대상사업은 107개 사업, 112개 성과지표로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음.

○ 2022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현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달성률(D)	2021회계연도 대비 (C-D)
성과지표(A)	성과목표 달성 여부			
	성과지표달성(B)	달성률 (C=B/A)		
112개	100개	89.29%	84.68%	4.6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시행령 제40조의 2
- 「지방회계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 문제점

1. 성과목표 달성률 저조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현액은 699,20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98,71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총 112개의 성과목표 지표 중 달성은 100개, 미달성 12개로 달성률 89.29%로써 전년대비 4.61% 증가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에 비해 성과목표 달성률은 다소 저조한 실정이며, 최근 3년간 목표 달성률을 보면 그 증감의 폭 또한 미미함.

○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집행률 및 달성률 현황

구 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집행률	99.81%	99.88%	99.93%
달성률	81.36%	84.68%	89.29%

2.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목표 설정 소홀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임에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거나, 성과목표를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가 많음
- 상대적으로 활동이 부족한 성별 활동 확대를 목표치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 설정으로 성인지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 달성에 미흡
- 목표치와 실적치를 나타내는 계수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는 사업이 많아, 목표 달성의 난이도와 사업의 효과분석을 이해하기 어려움.

□ 개선 및 권고사항

1.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관련

- 매년 대상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사업지표별 목표값, 실적값, 전년도 목표 달성률을 비교 분석하여 목표치 설정 오류와 과소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가 요구됨
- 성인지예산이 성평등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미달성 목표(12개)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목표 설정 개선 관련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시기 바람. 필요할 경우, 성인지와 관련 있는 사업과 성과목표를 새로 발굴할 것을 권고함
-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담당자)에 대한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을 연 1-2회 실시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업선정의 오류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편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성과목표와 실적치, 효과분석의 상관관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는 등 목표 달성의 난이도와 사업의 효과분석을 이해하기 쉽게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개선하시기 바람

붙임: 1. 2022년 성인지예산 선정 재검토 대상 및 목표치 설정 부적합 사업 내역
2. 목표치 및 실적치 오류 수정이 필요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내역

※ 관련부서 : 예산과, 여성가족과, 전 실과

(붙임1) 2022년 성인지예산 선정 재검토 대상 및 목표치 설정 부적합 사업 내역

번호	실과	세부사업	성인지 대상 재검토*	목표치 부적합**
1	정책기획과	도정성과평가		○
2	청년정책과	인구인식개선강화		○
3	법무행정과	자치입법역량강화		○
4	안전정책과	재난및안전활동단체지원		○
5	자치행정과	자치단체간협력강화	○	
6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지역주민지역협의회(직접)		○
7	체육정책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		○
8	체육정책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		○
9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	○	
10	사회복지과	노숙인시설운영(2차)(전환사업)	○	○
11	사회복지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지원)		○
12	사회복지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직접)		○
13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지원)		○
14	여성가족과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
15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직접)	○	
16	보건의료과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	○	
17	기후환경정책과	자연환경연수원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전북)		○
18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지원	○	○
19	주택건축과	도시재생아카데미및지원센터운영	○	○
20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산물유통마케팅		○
21	교육협력추진단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
22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전라북도)	○	

* 성별 구분이 어려운 사업으로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분류가 적합하지 않음

** 성인지 예산 사업의 목표달성, 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치로 부적합함 판단됨

(붙임2) 목표치 및 실적치 오류 수정이 필요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내역

-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분석의 2021, 2022 실적치 불일치
-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실적치를 확인할 수 없어 수정이 필요함

구분	실과	세부사업	목표치, 실적 확인 대상사업
1	금융 사회적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2차)(전환사업)	○
2	총 무 과	가 족 친 화 프 로 그 램 운 영	○
3	여 성 가 족 과	결 혼 이 민 자 사 회 통 합 정 책	○
4	여 성 가 족 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건강가정)	○
5	여 성 가 족 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
6	여 성 가 족 과	다 문 화 가 족 정 착 지 원 (시 군)	○
7	여 성 가 족 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경상보조)	○
8	여 성 가 족 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
9	여 성 가 족 과	다 문 화 가 족 지 원 센 터 운 영	○
10	여 성 가 족 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
11	여 성 가 족 과	다 문 화 가 족 특 성 화 사 업	○
12	장 복 애 지 인 과	여 성 장 애 인 교 육 사 업	○
13	장 복 애 지 인 과	장애인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교육	○
14	농 산 유 통 과	친 환 경 농 산 물 유 통 마 케 팅	○
15	교 육 협 력 단	ICT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
16	대 외 협 력 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시군)	○
17	구 조 구 급 과	구 급 체 계 확 립 운 영 경 비	○

수 범 사 례

1.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
2.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재활병원 건립
3.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
4. 전라북도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5. 데이터 기반 자금운용으로 역대 최고 이자수입 달성

1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

□ 추진개요

- (추진배경)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달성
- (추진방향)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별 지표 달성 결과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으로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추진사항

사업명	내용	지급금액 (단위: 천원)	비고
합 계		651,000	
전주시	○ 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 발굴 용역	48,250	
군산시	○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및 지표 관련 사업 지원	48,750	
익산시	○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역량 강화 및 지표 관련 사업 지원	43,250	
정읍시	○ 우수부서 포상금, 역량강화 지원	44,750	
남원시	○ 우수부서 인센티브 담당자 워크숍 추진 등	55,250	
김제시	○ 합동평가 성과제고 지원 및 지표 관련 사업 지원	51,750	
완주군	○ 합동평가 우수사례 발굴, 포상금 지급 및 지표 관련 사업 지원	43,750	
진안군	○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및 지표관련 사업 지원	42,250	
무주군	○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우수부서 포상금, 지표 관련 사업 지원	51,750	
장수군	○ 우수부서 인센티브, 워크숍 및 컨설팅, 지표 관련 사업 지원	38,250	
임실군	○ 우수부서 포상, 영상회의 장비 구입, 지표 관련 사업 지원	49,250	
순창군	○ 우수부서 시상 및 지표 관련 사업 지원	44,250	
고창군	○ 합동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포상금 지급	41,250	
부안군	○ 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48,250	

□ 추진성과

- 시군 재정인센티브 부여로 자율적인 인센티브 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합동평가 능동적인 참여와 실적 제고 동기부여 강화로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2 전북권역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재활병원 건립

□ 추진개요

- (추진배경) 전국 대비 도내 장애인 비율이 높으나*, 도내 전문재활 의료시설 부족으로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의 공공의료 재활 체계전달 기반 구축 필요성 대두 * 전국 5.1%/전북 7.4%
- (추진방향) 전북권 재활전문 의료기관 건립 2개소(입원 150병상, 낮21병상)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1 ~ 2025년(4년)
- ▶(총사업비) 560억원(국비 171, 지방비 171, 자부담 218)
- ▶(사업위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218-3번지(예수병원 제2주차장 일원)
- ▶(사업규모) 지하 3층, 지상 7층/연면적 17,345.48㎡

□ 추진상황 및 계획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공모 선정 : '19. 9.
- 권역 재활병원 복지부 공모 선정 : '21. 8.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1. 11.
* 통합건립 추진 : 국비 선집행, 사업기간 연장('22.12월 →'24.12월), 위치 변경(재활병원 옆)
- 통합 재활병원 기본설계 심의 승인 : '22. 5. ~ 11.
- 통합 재활병원 실시설계 진행 : '22. 11. ~ '23. 6.
- 통합 재활병원 착공 : '23. 12.
- 통합 재활병원 준공 및 개원 : '25. 12.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두 개 사업을 통합으로 건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변경 추진으로 재활의료체계 구축이 용이하여 장애인 편의·치료효과 증대
- 전문 재활의료기관 확충으로 도민 재활의료 수요 욕구 충족
 - 현재 대학병원2곳, 종합병원 1곳에서만 주로 전문재활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속가능한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건강증진, 소아의 전문 재활 치료 가능
- 일자리 창출 효과(700여명 이상)
 - 공사 관련 400여명, 기관 종사자 연간 300여명

※ 관련부서 : 보건의료과

참고

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3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배경) 지역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구조 형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2022. 1~12월 /43,876백만원(국비<30,606>, 도비 10,086, 시군비 3,184)
- (사업내용)
 - 주력산업 :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 스타기업 : 지역대표 중소기업 육성
 - 연고산업 : 시·군 단위의 지역특화산업육성
 - 기 타 : 산업기술단지 거점운영, 바우처 지원 등

□ 추진사항

- '22년 사업 신규 R&D, 비R&D 공모 선정('22. 1~5월)
- '21년 지역산업 진흥사업 성과분석 및 실무위원회 운영('22. 4~5월)
- '21년 사업 성과평가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기업 4회 현장방문('22. 6월)
- '21년 사업 성과보고서 제출/평가('22. 6~7월)
- 산업별 정책수요 및 기업 특성조사('22. 10~12월)
- R&D, 비R&D 과제 참여기업·기관 성과모니터링(상시)

□ 추진성과

- 중기부 “'21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및 '22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성과 최우수(S)등급, 계획 우수(A등급)
 - 사업화 매출액 1,128억원, 신규고용 303명 달성
 - 국비 추가 인센티브 22억원 확보

< 우수사례 >

▶(기업 성공사례) (주)디딤돌 외 2건

- (주)디딤돌 : 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용 승강기 관련기술 확보 및 제품 개발·판매
- 울천공업(주) : 중형 트랙터 스티어링 부품 관련 우수특허 등록 및 국산화 개발
- (주)한호기술 : 일본 현지시장 진출(스마트스쿠터 수출)

▶(우수과제 사례) (주)휴먼컴퍼지트 외 1건

- (주)휴먼컴퍼지트 : SUV기반 구급차용 스포일러 상용화 개발(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기업지원사업

□ 기대효과

- 도내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 맞춤형 기업지원과 관리를 통해 지역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및 다양한 우수기업 육성

※ 관련부서 : 미래산업과

4 전라북도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추진배경) 전라북도 농산물의 대단위 유통창구인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추진방향)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개소, 경매 전·후 도매시장 내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농산물 유통 신속차단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19~2021년
- ▶(사업비) 2,695백만원(국비 700, 도비 1,050, 시·군비 945)
- ▶(사업량) 1개소(전주농산물검사소, 전주시 송천동)
- ▶(사업내용) 현장검사소 1동(2층, 564.7㎡), 정밀분석장비(28종 41대)

□ 추진사항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역	비고
설계 및 건축 ('20.10~'21.4)	1,295	▶ 현장검사소(중앙실험실, 기기실 등) - 1층 330㎡, 2층 234.7㎡	21년 4월 준공
장비도입 ('20~'21)	1,400	▶ 정밀분석장비 도입 41대(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등 28종) ▶ 정밀분석장비 설치완료	21년 6월

※ 전주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2021. 5.3~2026.5.2.) 기간만료 후 연장예정

-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경매 전·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 사업비 : 83백만원(도비 100%)
 - ※ 재원 : 농산물분야 잔류농약 검사 및 연구
 - 도내 3개 공영도매시장(전주, 익산, 정읍) 농산물 경매 전·후 유통농산물 검사

□ 추진성과

-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설치를 통한 전문검사 능력 강화
- 자체검사 건수 증가로 도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 검사건수 및 부적합 농산물 차단 건수 증가로 먹거리 안전 확보

구분	2020년(개소 전)	2021년(개소 후)	2022년
검사건수	771	1,032	1,887
부적합 건수	3	12	8

※ 관련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5 데이터 기반 자금운용으로 역대 최고 이자수입 달성

□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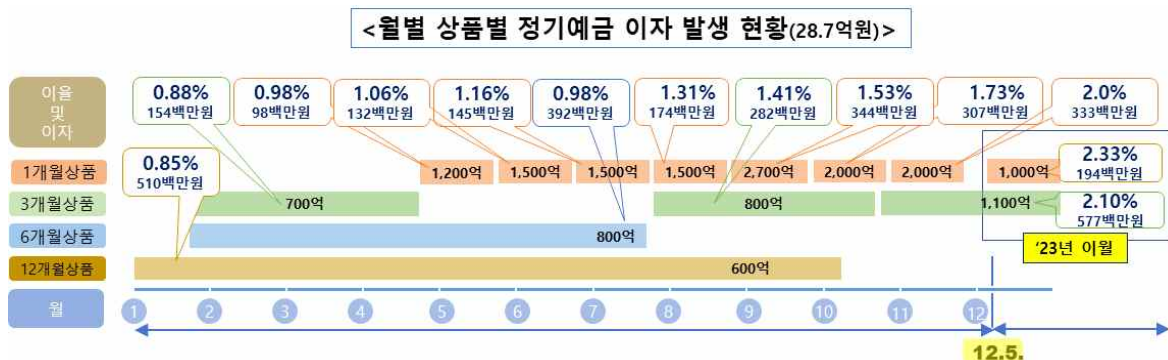
- (추진배경)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나 자금 운용 모델이 없음
- (추진방향) 가장 유리한 예금상품과 예금규모를 산정·운용하기 위한 일자별 유휴자금 예측이 가능한 자금 운용 모델 개발·운용

□ 추진사항

- (자금 운용 방향 및 기준 설정)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 최우선 추진
 - 유휴자금은 경제상황·자금보유기간 등을 고려 최적의 금융상품*으로 운용
 - * 공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금(1·3·6·12개월)
- (전라북도 자금 운용 모델 개발·운용)
 - (기존) 유휴자금 예측 모델이 없어 현재 잔액 기준으로 보수적 운용
 - (개선) 자금 운용 모델 적용으로 연간 일자별 유휴 자금 예측 가능, 가장 유리한 기간·규모로 정기예금 운용 가능 ⇨ 이자수입 극대화

□ 추진성과

- 자금운용 모델 적용으로 '22년 역대 최고 이자 수입 달성
 - 이자 수입 82.5억원 ('21년 34억원 대비 250% 증)
 - * ('20) 33억, ('19) 63억, ('18) 51억, ('17) 44억, ('16) 52억, ('15) 53억, ('14) 47억, ('13) 40억, ('12) 62억, ('11) 64억
 - (정기예금) 28.7억원 ※ 14개 운용



- (수시입출금식예금) 31.7억원 ※ 50회 이상 운용
- (공금예금) 22.1억원 ※ 수시운용
- '23년 이자수입 113억원 추정 (전년대비 137% 달성)

※ 관련부서 : 회계과

IX. 현장방문 결과

순창 설랜드 주요사업 현장 방문

□ 방문개요

- 일 시 : 2022. 5. 8.(월) 10:00 ~ 16:30
- 장 소 : 순창 설랜드 일원
- 주요내용 : 설랜드, 발효테마파크, 힐링스파 등 주요 재정사업 현장 방문

□ 주요 사업 추진현황 ※ '15년부터 동부권사업 중심으로 도비 238억원 지원

- 순창건강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완료) : 98억원
- (사업기간) 2015 ~ 2020 / 식문화 실습관 건립, 구절초 동산 조성 등
- 설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완료) : 58억원
- (사업기간) 2017 ~ 2021 / 건강휴양체험시설 구축, 숙박시설 15동 건립 등
- 강천힐링스파(완료) : 95억원
- (사업기간) 2016 ~ 2022 / 수체험센터 건립, 온천관광정원 1식 등
- 휴메디푸드클러스터 육성(추진중) : 95억원
- (사업기간) 2021 ~ 2025 / 약국 정원조성, 메디푸드 상품 개발 등
- 치유농업테마공원(추진중) : 99억원
- (사업기간) 2020 ~ 2025 / 나눔농장, 키움농장, 희망농장 등

□ 결산검사 위원 당부사항

- 웰니스 관광지 선정 필요, 관광자원과 운영 프로그램 적극 홍보 필요
- 향후 치유농업테마공원 사업 추진 시 반려 식물 사업 연계 필요

【관련 사진】



설랜드 현장 방문



발효테마파크 사업 보고

X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2021회계연도 지적.개선 사항 처리결과 -

1. 기금 확대 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 ①체육정책과 ②여성가족과 ③노인복지과 ④기후환경정책과 ⑤지역정책과 ⑥농산유통과

2. 예비비 적정 편성 및 집행 권고

- ①예산과(총괄) ②관광산업과 ③장애인복지과 ④감염병관리과 ⑤도로관리사업소

3.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 ①예산과

4. 세출예산 이월액 처리방안 강구

- ①예산과

5.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필요

- ①물통합관리과 ②도로공항철도과

6.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정재정 운용 소홀

- ①정보화정책과 ②자치행정과 ③문화산업과 ④체육정책과 ⑤보건의료과 ⑥교육협력추진단

7. 지방보조금 미반납금액 반납조치 철저

- ①예산과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체육정책과
제 목	1-1. 기금 확대 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체육진흥기금】
개선내용	○ 집행액이 5% 미만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된 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로 기금운용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기금은 전북체육진흥 재정자립기반 조성과 도민의 체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12년간(2006~2017년) 목표액 100억원 조성 ○ 체육진흥기금은 원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 단기간 내 기금 고갈이 우려되어, 도 조례로 이자 발생액 범위 내에서 기초종목 및 꿈나무 육성사업에 사용하기로 동의('17.11.20.) ○ 이러한 이유로 현 조례 아래에서는 이자율 하락 시 기금 확대조성 어려운 실정이며, 의회에서도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 일반예산사업은 단년도 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반면, 체육진흥기금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체육 사업을 위해 사용 중임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조성과 운용에 있어 체육계 및 도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고, 관련 조례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조례 개정을 포함한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체육회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여성가족과
제 목	1-2. 기금 확대 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성평등기금】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이 50억원 미만으로 조성되어 있고, 농수산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은 집행액이 5% 미만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금조성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1997년 기금을 설치하여 8년간(1997~2003년) 목표액 30억원 조성 ○ 2021년 말 3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45조(기금의 용도)에 의거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사업비 70백만원(2.1%)으로 공모 사업 추진 중 <p>□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7개 사업 47백만원, 2023년 9개 사업 68백만원으로 확대 지원 중 ○ 기금 활성화를 위한 사용제한 조례 문구 개정 완료(‘23.5월) ○ 성평등기금 조성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자수입금 뿐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활용한 사업비 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단체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노인복지과
제 목	1-3. 기금 확대 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인복지기금】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이 50억원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수산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은 집행액이 5% 미만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금조성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 필요
처리결과 또는 금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97년 기금을 설치하여 ‘21년도말 21억원의 기금 조성 ○ 날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게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5년) 및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 개정(’22.10.21.) □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에는 34백만원(9개 사업) 운영하였으나, 2023년에는 67백만원(10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 중임. ○ 노인복지기금을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활성화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기후환경정책과															
제 목	1-4. 기금 확대 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환경보전기금】															
개선내용	○ 50억 미만으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기금조성 취지에 맞도록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															
처리결과 또는 계획	<p>□ 추진경과</p> <p>○ 환경보전기금은 2000년대 초반 최초 2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연간 이자수입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왔고</p> <p>○ 2019 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전출금 확보를 통해 기금 조성 확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러 기금운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적립에 한계가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최근 4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사업비(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2019</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0</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1</th> <th style="text-align: center;">2022</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 전출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86</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사업비(지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194</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1</td> <td style="text-align: center;">989</td> <td style="text-align: center;">980</td> </tr> </tbody> </table> <p>□ 처리결과(계획)</p> <p>○ 환경보전기금이 2023.12.31.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으로 신설 운영할 계획임 *설치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제4항,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예정</p> <p>○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음.</p>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전출금	200	1,386	1,000	1,000	사업비(지출)	194	1,301	989	980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전출금	200	1,386	1,000	1,000												
사업비(지출)	194	1,301	989	980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지역정책과																																																						
제 목	1-5. 기금 확대 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개 선 내 용	○ 50억 미만으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기금조성 취지에 맞도록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																																																						
처리 결과 또는 계획	<p>□ 추진경과</p> <p>○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타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해 1단계로('16년~'20년) 3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투자 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여 '25년까지 조성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45억원 추가적립)로 목표액 80억원 조성</p> <p style="text-align: center;"><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계획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f9c4;">1~2단계 조성규모 합계</th>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ff9c4;">2단계 연도별 적립규모</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1단계('16~'20)</th> <th style="text-align: center;">2단계('21~'25)</th> <th style="text-align: center;">21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22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23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24년</th> <th style="text-align: center;">25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 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7,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주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540</td> <td style="text-align: center;">24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완주군</td> <td style="text-align: center;">36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body> </table> <p>□ 처리결과(계획)</p> <p>○ '25년 성과공유기금 조성 완료(80억) 후 시·군의 개별사업 지원보다는 시·군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 시·군 공동사업, 지역균형발전 취지의 사업 등을 추진하되,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사업 위주(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등)로 성과공유사업을 발굴하겠음</p>	1~2단계 조성규모 합계				2단계 연도별 적립규모					구분	합 계	1단계('16~'20)	2단계('21~'25)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8,000	3,500	4,500	800	900	900	900	1,000	도 비	7,100	3,100	4,000	700	800	800	800	900	전주시	540	240	300	60	60	60	60	60	완주군	360	160	200	40	40	40	40	40
1~2단계 조성규모 합계				2단계 연도별 적립규모																																																			
구분	합 계	1단계('16~'20)	2단계('21~'25)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 계	8,000	3,500	4,500	800	900	900	900	1,000																																															
도 비	7,100	3,100	4,000	700	800	800	800	900																																															
전주시	540	240	300	60	60	60	60	60																																															
완주군	360	160	200	40	40	40	40	40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산유통과
제 목	1-6. 기금 확대 조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개선내용	○ 집행액이 5% 미만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된 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로 기금운용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 관련 분야에 대해 농협에서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지원 기금임 ○ '22. 9월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수매·저장자금 확대 지원으로 '23년 3월말 기준 총 1,610억원 융자 실행함 ('21년 87억원)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기금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대비 융자지원 신청 증가로 이차보전 지원 증가('21년 7억원 → '23년(계획) 50억원) ○ 벼 수매 및 저장 자금지원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시달) ○ 기금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지침 등 개정·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만40세미만 → 만45세미만) - 융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대상 확대 -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수매·저장사업 지원조건 세분화(20~50억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2-1. 예비비 적정 편성 및 집행 권고 【총 괄】																																																									
개선내용	<p>○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사용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p> <p>○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예비비 지출 취지에 부합하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권고</p> <p>【관련 지출 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관련 과목</th> <th rowspan="2">지출 결정액</th> <th rowspan="2">지출액</th> <th colspan="2">처리일자</th> <th rowspan="2">예비비 지출사유</th> </tr> <tr> <th>조직</th> <th>통계목</th> <th>결정일</th> <th>지출일</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5건</td> <td>2,473</td> <td>748</td> <td></td> <td></td> <td></td> </tr> <tr> <td>관광총괄과</td> <td>사무관리비</td> <td>73</td> <td>72</td> <td>'21. 4. 26.</td> <td>'21. 5. 26.</td> <td>관광업계방역물품지원</td> </tr> <tr> <td rowspan="2">장애인복지과</td> <td>자치단체자본보조</td> <td>41</td> <td>41</td> <td>'21. 4. 29.</td> <td>'21. 8. 23.</td> <td>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td> </tr> <tr> <td>자산및물품취득비</td> <td>2</td> <td>1</td> <td>'21. 4. 29.</td> <td>'21. 6. 14.</td> <td>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td> </tr> <tr> <td>감염병관리과</td> <td>보수</td> <td>7</td> <td>7</td> <td>'21. 8. 13.</td> <td>'21. 9. 29.</td> <td>생활치료센터 수당 지급</td> </tr> <tr> <td>도로관리사업소</td> <td>시설비</td> <td>2,350</td> <td>2,349</td> <td>'21. 8. 12.</td> <td>'22. 12. 27.</td> <td>지방도 수해복구사업</td> </tr> </tbody> </table>						관련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통계목	결정일	지출일	계	5건	2,473	748				관광총괄과	사무관리비	73	72	'21. 4. 26.	'21. 5. 26.	관광업계방역물품지원	장애인복지과	자치단체자본보조	41	41	'21. 4. 29.	'21. 8. 23.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	1	'21. 4. 29.	'21. 6. 14.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감염병관리과	보수	7	7	'21. 8. 13.	'21. 9. 29.	생활치료센터 수당 지급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2,350	2,349	'21. 8. 12.	'22. 12. 27.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관련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통계목			결정일	지출일																																																					
계	5건	2,473	748																																																							
관광총괄과	사무관리비	73	72	'21. 4. 26.	'21. 5. 26.	관광업계방역물품지원																																																				
장애인복지과	자치단체자본보조	41	41	'21. 4. 29.	'21. 8. 23.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	1	'21. 4. 29.	'21. 6. 14.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감염병관리과	보수	7	7	'21. 8. 13.	'21. 9. 29.	생활치료센터 수당 지급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2,350	2,349	'21. 8. 12.	'22. 12. 27.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처리결과 또는 계획	<p>□ 추진경과</p> <p>○(관광총괄과) 방역물품 계약(5.6.)→납품(5.17.)→지급(5.26.) 절차로 집행</p> <p>○(장애인복지과) '21. 4월말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여 긴급하게 방역물품 지원 결정, 시·군 수요변동 등의 사유로 일부 지출 지연</p> <p>○(감염병관리과) 생활치료센터 휴일 및 야간근무 수당으로 통상 일정기간 근무자들의 근무내역을 산정하여 익월 지급하므로 지출 시차 발생</p> <p>○(도로관리사업소) 실시설계('21.8.30.~10.30.)→공사발주('21.11.15.)→준공('22.8.16.) 절차에 따라 사업 완료(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p> <p>□ 처리결과(계획)</p> <p>○(승인)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p> <p>○(집행) 집행 결과는 집행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의무화('22.5월부터 적용),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p> <p>※ '21년 회계연도 결산 개선·권고사항 관련 조치 협조 요청('22.5월, 전실과)</p>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관광산업과
제 목	2-2. 예비비 적정 편성 및 집행 권고 【관광업계 방역 물품 지원】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사용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 ○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예비비 지출 취지에 부합하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권고
처리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재유행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광업소의 방역을 지원하고, 여행객 감소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예비비 결정 이후 지출까지 한달정도 소요된 것은 방역물품 선정과 계약 및 납품 등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이었음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긴급한 경우 외에는 편성을 지양하겠으며 사용 승인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제 목	2-3. 예비비 적정 편성 및 집행 권고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사용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 ○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예비비 지출 취지에 부합하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권고
처리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업은 '21.4월말경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로 시설 출입 시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하고자 예비비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 시군을 통한 사업은 시군 및 시설의 수요변동 등의 사유로 실 지급 일자가 지연되었고,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된 사업은 '21. 5. 14일자로 검수하여 '21. 5. 21일내 시설에 설치하였으나 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절차가 지연된 것임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예비비 편성 취지에 맞게 적정 시기에 집행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주의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제 목	2-4. 예비비 적정 편성 및 집행 권고 【생활치료센터 도 근무자 휴일 및 야근수당】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사용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 ○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예비비 지출 취지에 부합하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권고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반 근무자에 대해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편성 ○ 생활치료센터 예산은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편성되었으나, 센터 운영 종료시기 예측 불가 및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행정운영반 근무자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기준이 없어 예산 미편성으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 □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후 24시간 합숙근무 근무자에 대하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받고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도로관리사업소
제 목	2-5. 예비비 적정 편성 및 집행 권고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사용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 ○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예비비 지출 취지에 부합하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권고
처리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은 '21년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수립 후 착공('21.11월)하여 '22.8월 준공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지출승인 통지 : '21. 8. 13.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1. 9. 13. - 공사착공 : '21. 11. 15. - 공사준공 : '22. 8. 16. </div>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용 승인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3.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이 3,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31.2%(948억원) 증가, 특히 초과 세입 규모는 1,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91%(769억원) 증가 ○ 세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
처리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 세입 : 1,472억원(순세계잉여금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택지개발지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 증가하는 등 지방소비세 증가로 초과 세입 발생 ○ 예비비 집행잔액 : 1,651억원(순세계잉여금의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결산 추경에 시·군 보조금 반환수입,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이 세입에 반영됨에 따라 예비비 예산 증액(546억원→1,549억원 /증 1,003억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재정분석 시 세수오차 개선 노력도 추가, 지방세정 운영평가에 세수오차 비율과 개선도 지표 반영,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첨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자문회의 구성·운영('22. 9월 ~) ※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군 추계액 교차검증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 ○ (사업비 등 집행잔액 최소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수 예산만 반영, 집행잔액 및 취소사업 추경예산 시 조정·삭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회계연도 결산 개선·권고사항 관련 조치 협조 요청('22.5월, 전실과)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4. 세출예산 이월액 처리방안 강구																				
개선내용	○ 이월사업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예산낭비 초래,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금없는 이월 등 예산이월 최소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p>□ 추진경과</p> <p>○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및 리더센터건립(14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조성(40억원) 등 대규모 건축사업 행정절차 지연 및 시기미도래, 중앙 부처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 등으로 1,322억원(명시 916억원, 사고 406억원) 이월처리 하였음('20년 이월액 대비 31억원 증)</p> <p style="text-align: center;">< 사유별 이월 현황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유</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A+B)</th> <th style="text-align: center;">명시(A)</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고(B)</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13건, 1,322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5건, 916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8건, 406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금없는이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22건, 536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건, 242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2건, 294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절차 지연</td> <td style="text-align: center;">36건 482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2건 433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건 49억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기미도래</td> <td style="text-align: center;">55건 304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3건 24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2건 63억원</td> </tr> </tbody> </table> <p>□ 처리결과(계획)</p> <p>○ (예산편성)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하여 주요사업 집행실적 점검과 부진사업은 추경 삭감 조정 등을 통해 적정예산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반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재이월 방지 - 대규모(50억 이상) 부진사업 집행관리 강화 등 <p>○ (국비미교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확정 통보된 국비 예산에 대해 조기 송부 요구 등(수시)</p> <p style="text-align: center;">※ '21년 회계연도 결산 개선·권고사항 관련 조치 협조 요청('22.5월, 전실과)</p>	사유	계(A+B)	명시(A)	사고(B)	계	113건, 1,322억원	65건, 916억원	48건, 406억원	자금없는이월	22건, 536억원	10건, 242억원	12건, 294억원	행정절차 지연	36건 482억원	22건 433억원	14건 49억원	시기미도래	55건 304억원	33건 241억원	22건 63억원
사유	계(A+B)	명시(A)	사고(B)																		
계	113건, 1,322억원	65건, 916억원	48건, 406억원																		
자금없는이월	22건, 536억원	10건, 242억원	12건, 294억원																		
행정절차 지연	36건 482억원	22건 433억원	14건 49억원																		
시기미도래	55건 304억원	33건 241억원	22건 63억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물통합관리과
제 목	5-1.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필요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 매입한 토지를 이용과 관리의 목적에 맞게 지목 정리(변경)하고, 자투리 매입토지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여 일반재산으로 재산관리의 일원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준공 시 증빙서류 등을 통한 지목 변경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당시 관련 절차 누락으로 지목의 불일치 발생 ○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공사준공 이후 용도 지정 누락 및 용도폐지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되지 않은 일반재산 존재 □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조사 및 시·군 협조를 통한 지목변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의 경우 이용·목적에 맞는 공유재산 지목 변경 요청 ○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중 현재 하천구역 내 토지인 경우 지목확인 및 용도변경(일반재산 → 행정재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도에서 양여받은 폐천부지(일반재산)의 경우,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및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훈령 제1754호)」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관리 및 매각업무가 위임되어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하지 않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도로공항철도과
제 목	5-2.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필요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부지가 전, 답 등으로 되어있고, 도로 정비 시 매입한 자투리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이용과 관리의 목적에 맞게 공유재산 지목 정리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도 확포장공사 준공 시 증빙서류 등을 통한 지목 변경을 신청 하였어야 하나, 당시 관련 절차 누락으로 지목의 불일치 발생 ○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공사준공 이후 용도 지정 누락 및 용도폐지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되지 않은 일반재산 존재 □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항철도과 소관 공유재산의 이용과 관리의 목적에 맞게 공유 재산 지목 정리 추진 ○ 관리 중인 공유재산 중 행정상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행정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게 이관하여 재산 관리의 일원화 추진 <p style="margin-left: 20px;">※ '21년 1건, '22년 20건, '23년 4월 3건</p>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정보화정책과
제 목	6-1.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 재정 운용 소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p> <p>○ 본 사업은 정보화 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음</p> <p>○ 추경예산 편성 당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아 삭감하지 않았으나, 12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전액 불용처리함</p>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p>○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 삭감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2022년에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우수 마을기업('22.12. 7. / 경남 거창군 가남허브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음.</p>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자치행정과
제 목	6-2.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 재정 운용 소홀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 <p>○ 도 주민자치협의회 활동 지원(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 사업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되어 부득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함.</p>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p>○ '22년도에는 전북 이·통장 연합회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시·군 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재정을 적정하게 운용함</p>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문화산업과
제 목	6-3. 예산전액 불용처리로 건전재정 운영 소홀 【전주 독립영화의 집,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 건립】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독립영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는 '21년에 설계공모 선정 조건으로 교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설계공모 미선정(당선작 미결정)으로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불용처리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는 '21년에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조건으로 교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기간 발생 및 용역의 2번 유찰로 기간 지연되어 국비 미교부로 인한 자금 없는 불용처리 <p>□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독립영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처리된 국비 10억원은 '22년 문체부 예산에 반영됨 - 본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은 '22. 1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준공을 위한 공사비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처리된 국비 7억원은 '22년 문체부 예산에 반영됨 - 본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은 '22.3월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 방문하여 협조 요청 건의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체육정책과
제 목	6-4.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재정 운용 소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 ○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로 당초 무주에서 개최 예정이던 대회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에 따라 취소 결정(2021. 4월)됨에 따라, 도비는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음. ○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차년도에 17개 시도 일괄 정산에 따라 전액 집행잔액 발생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 2022년부터 예산 전액 불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보건의료과								
제 목	6-5.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 재정 운용 소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 전문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받은 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전라북도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대상이 없어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 ※ ('19년) 2명, ('20~21년) 0명, ('22년) 3명, ('23년) 5명 <p>□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및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p style="margin-left: 20px;">< 치료보호 절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padding: 5px;">① 마약류 불법투약 (마약류중독자)</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②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 및 치료보호 의뢰 (검찰, 본인·보호자)</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③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 (치료보호기관)</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④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 치료보호 여부, 치료기간 결정 (치료보호심사위원회)</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⑤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보호기관)</td> <td style="padding: 5px;">⑥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치료보호기관)</td> <td style="padding: 5px;">⑦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마약류중독자)</td> <td style="padding: 5px;">⑧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마약류중독자)</td> </tr> </table>	① 마약류 불법투약 (마약류중독자)	②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 및 치료보호 의뢰 (검찰, 본인·보호자)	③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 (치료보호기관)	④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 치료보호 여부, 치료기간 결정 (치료보호심사위원회)	⑤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보호기관)	⑥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치료보호기관)	⑦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마약류중독자)	⑧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마약류중독자)
① 마약류 불법투약 (마약류중독자)	②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 및 치료보호 의뢰 (검찰, 본인·보호자)	③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검사 (치료보호기관)	④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 치료보호 여부, 치료기간 결정 (치료보호심사위원회)						
⑤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보호기관)	⑥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치료보호기관)	⑦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마약류중독자)	⑧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마약류중독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교육협력추진단
제 목	6-6.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 재정 운용 소홀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원】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추진경과</p> <p>○ '21년 신설된 사업(13,500천원 / 국비 50%, 도비50%)으로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없었음</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지원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p>가.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이내인 자(21.1.1.이후 퇴소)</p> <p>나. 퇴소일기준 과거 3년간 2년이상 보호받은 자</p> <p>다. 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p> </div> <p>*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해당부처(여성가족부)에 감액 요구하였으나 미반영</p>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p>○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여 '23년부터 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직전 1년 연속보호 → 직전 6개월 연속보호)</p> <p>○ 시군 및 관련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지원대상자 증가('21년 0명 → '22년 4명 → '23년 7명)</p> <p>○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있을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겠음</p>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7. 지방보조금 미반납금액 반납조치 철저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20년도 보조사업 미반납액 9,922백만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는 등 보조금 업무 수행에 철저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부서의 정산 및 반납의 과정을 거친 후 완료 → 20년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등 미반납액* 발생 * 24개 실과 / 9,921,777천원(민간보조금 21,541천원, 자치단체보조금9,900,236천원) ○ 미반납액 대부분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99.8%)으로 추경예산 반영 등 시·군의 적극적 노력 및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집행내역, 정산여부(고지서 발부)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 반납 완료까지의 관리는 다소 미흡 □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반납 현황('23.4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납(2,619,043천원), 이월(4,065,715천원), '23년 반납(3,237,019천원) ○ 23년 지방보조금 단계별 점검(1~2월 /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현장점검 내실화, 미반납금 반환 확행을 위한 단계별 점검 ○ 미반납 사업자(민간, 시·군)에 대한 페널티 부여('22.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자 선정 심사 시 선정 제한 및 보조금 지원 감액 ○ 23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체납액 감점지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 체납 및 납부의지에 따라 감점(△7~△3점) - 시·군 : 체납 및 반납금액 세출예산 편성 점검(△7~△3점) ○ 지방보조금 관련 시스템 활용한 정산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교부·집행·정산·반납 전산화)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활용한 체납액 파악